

과천도시공사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 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 라 한다)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 우대 지침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대상업무 등) ① 성과우수자 우대의 대상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며 지난 연도에 추진한 업무를 포함한다.

1. 열정적인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분야
2.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 종전대비 현저한 수입증대와 예산을 절감한 분야
3.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업무성과 우수로 포상 받은 사례
4. 고객만족, 평생학습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방법 등) 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중복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1.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적용
2. 사장 표창 및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따른 인사고과 가점 부여
3. 성과포상금 지급

② 성과우수자 대상업무 성과가 지난 연도에 발생되었던 경우에도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공사 성과우수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직원 가운데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우수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① 사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성과우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사규정 제44조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성과우수자 우대방법에 관한 사항
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관련한 심의 조정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과우수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성과우수자 제외 대상)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우수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지원할 경우
2. 동일한 성과로 공사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허위 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업무성과 우수자 성과포상금 지급 기준표 (제3조제3항 관련)

1. 국·도비 확보분야

국·도비 확보 금액	1건당 지급기준	비 고
5천만원 미만	200천원 이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00천원 이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00천원 이내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700천원 이내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0천원 이내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300천원 이내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500천원 이내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2,000천원 이내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500천원 이내	
50억원 이상	3,000천원 이내	

2.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분야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금액	1건당 지급기준	비 고
5천만원 미만	200천원 이내	매년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초 연도에 발생한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금액에 300%까지 인정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00천원 이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00천원 이내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700천원 이내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0천원 이내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300천원 이내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500천원 이내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2,000천원 이내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500천원 이내	
50억원 이상	3,000천원 이내	

3.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구 분	수상등급	평가기준	1건당 지급기준	비 고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	최우수	공사발전기여도 : 높음	1,500천원 이내	
		공사발전기여도 : 낮음	1,000천원 이내	
	우 수	공사발전기여도 : 높음	1,000천원 이내	
		공사발전기여도 : 낮음	700천원 이내	
	장 려		300천원 이내	
도 및 시·군단위 평가	최우수	공사발전기여도 : 높음	700천원 이내	
		공사발전기여도 : 낮음	500천원 이내	
	우 수	공사발전기여도 : 높음	500천원 이내	
		공사발전기여도 : 낮음	300천원 이내	
	장 려		200천원 이내	

4. 그 밖의 업무성과 우수 분야

경영성과 내용	1건당 지급기준	비 고
창의적사고로 내·외부고객만족 증대와 훌륭한 직장만들기에 기여하거나 기타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성과	200천원 ~ 1,000천원	

[별지 제1호서식]

국·도비 확보 성과우수자 추천서 (제4조 관련)

사 업 명				부 서 명		
1. 국·도비 확보						
사업예산 확보내역					확정일 또는 내시일	
합계	국비	도비	공사 예산			
2. 추천대상자						
우선순위	성 명	현 소속	직위 또는 직급	당시 담당업무	기여도 (%)	
1						
2						
3						
3. 사업내용 및 성과						
20 년 월 일 추천자 ○○○○ 장 ○○○ (인)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성과우수자 추천서 (제4조 관련)

사 업 명				부 서 명		
1.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내용						
1년간 수입증대액		1년간 예산절감액		매년 반복 발생여부		
2. 추천대상자						
우선순위	성 명	현 소속	직위 또는 직급	당시 담당업무	기여도 (%)	
1						
2						
3						
3. 사업내용 및 성과						
20 년 월 일 추천자 ○○○○ 장 ○○○ (인)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자 추천서 (제4조 관련)

사 업 명					부 서 명	
1. 수상 내용						
수여기관	수상일시	수상등급	훈 격	수상자	부상내역	
2. 추천대상자						
우선순위	성 명	현 소속	직위 또는 직급	당시 담당업무	기여도 (%)	
1						
2						
3						
3. 수상내용 및 성과						
20 년 월 일 추천자 ○○○○ 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그 밖의 업무성과우수자 추천서 (제4조 관련)

사 업 명		부 서 명			
1. 추천대상자					
우선순위	성 명	현 소속	직위 또는 직급	당시 담당업무	기여도 (%)
1					
2					
3					
2. 사업내용 및 성과					
20 년 월 일 추천자 ○○○○ 장 ○○○ (인)					

[별지 제5호서식]

업무성과우수자 선정 심사표 (제5조제3항 관련)

심사 번호	심 사 항 목 (평 점)		총점 (100)	창의성 (20)	효과성 (50)	계속성 (15)	완성도 (15)
	업	무 명					
1							
2							
3							
4							
5							
6							
7							
8							
9							
10							

※ 배점 기준표에 의거 심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

20 . .

심사자 : (서명)